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12.

제출자 : 이천시장

□ 개정이유

- 축산폐수처리비용 정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처리장 이용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요금을 차등화 하여 축산폐수 처리의 안정성과 처리시설의 가동율을 제고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화(안 별표).
 - 현행 : 1원/ℓ
 - 개정 : 허가대상 3원/ℓ, 신고대상 1원/ℓ, 규제미만 무료
-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20% 인상(안 별표)
 - 규모에 관계없이 5원/ℓ ⇒ 6원/ℓ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의관한법률”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시장과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을 “분뇨 등 수집·운반업”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저장액비조”를 “저장조”로 하며,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를 “액체성의”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중 “저장액비조”를 “저장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축산폐수 및 축분을”을 “축산폐수를”로 하고 “신고대상시설 미만”을 “처리장을 이용하는”으로 하며,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를 “저장조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중 “백분의 5범위내”를 “백분의 5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를”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으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대행계약요건”을 “허가요건”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업무에”를 “업무”로 한다.

제16조중 “2배를”을 “5배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폐기물관리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담당·팀장 직위·성명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담당자 성명·전화	김동식 (644-2257)

[별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구 분	단 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 고
허가대상	1ℓ 당	9원	6원	3원	
신고대상	1ℓ 당	7원	6원	1원	
신고대상미만	1ℓ 당	6원	6원	무료	

※ 축산폐수의 비중은 1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한 법률</u> 제32조 및 동 법을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대행업자”라 함은 <u>시장과 축산폐수 수집·운반업</u> 허가를 득한 자를 말한다. 4. “저장액비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u>액체성 또는 고체성의</u>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p>제4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 략> ③ <u>축분은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u> <p>제5조(<u>저장액비조 설치권장</u>) ① <u>시장은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 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조 (목적) -----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u> -----</p> <p>-----</p> <p>-----</p> <p>-----</p> <p>-----</p> <p>-----</p> <p>-----</p> <p>제2조 (정의) -----</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u>분뇨 등 수집·운반업</u> ----- ----- 4. “저장조”----- ----- <u>액체성의</u> ----- ----- <p>-----</p> <p>제4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p>제5조(<u>저장조</u> -----) ① ----- <u>축산폐수를</u> -----</p> <p>----- <u>처리장을 이용하는</u> -----</p> <p>----- <u>저장조의</u> -----</p> <p>-----</p> <p>-----</p> <p>②-----</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①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u>별표 1</u>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축분의 운반 및 적재비용은 시행규칙으로 한다.</p> <p>③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p> <p>① _____ _____ <u>별표</u> _____ _____</p> <p><u>〈삭 제〉</u></p> <p>②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_____ _____ _____</p>
<p>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u>100분의 5범위내</u> 징수보상금으로 분기말에 지급 할 수 있다.</p>	<p>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_____ _____ _____ <u>100분의 5범위 내에서</u> _____ _____</p>
<p>제13조(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생 략></p>	<p>제13조 (수수료 감면) ① _____ _____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_____ 1. _____ 2.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처리 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점검)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계약요건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 여부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 	<p>제15조 (지도감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허가요건 _____ 2. _____ 3. _____ 업무 _____ _____</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u>2배</u>를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p> <p><u>[별표 1]</u></p> <p><u>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u></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위</th><th>계</th><th>수집·운반 수수료</th><th>처리장 사용료</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1ℓ 당</td><td>6원</td><td>5원</td><td>1원</td><td></td></tr> </tbody> </table>	단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 고	1ℓ 당	6원	5원	1원		<p>제16조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 ----- ----- ----- 5배를 -----</p> <p><u>[별표]</u></p> <p><u>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u></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단 위</th><th>계</th><th>수집·운반 수수료</th><th>처리장 사용료</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허가 대상</td><td>1ℓ 당</td><td>9원</td><td>6원</td><td>3원</td><td></td></tr> <tr> <td>신고 대상</td><td>1ℓ 당</td><td>7원</td><td>6원</td><td>1원</td><td></td></tr> <tr> <td>신고대 상미만</td><td>1ℓ 당</td><td>6원</td><td>6원</td><td>무료</td><td></td></tr> </tbody> </table>	구 분	단 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고	허가 대상	1ℓ 당	9원	6원	3원		신고 대상	1ℓ 당	7원	6원	1원		신고대 상미만	1ℓ 당	6원	6원	무료	
단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 고																															
1ℓ 당	6원	5원	1원																																
구 분	단 위	계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비고																														
허가 대상	1ℓ 당	9원	6원	3원																															
신고 대상	1ℓ 당	7원	6원	1원																															
신고대 상미만	1ℓ 당	6원	6원	무료																															
	※ 축산폐수의 비중은 1로 본다.																																		